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

의안 번호	235
----------	-----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5일

발 의 자 김성기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영역이 「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해석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법령준수의무(안 제3조)
- 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입법예고 : 2024. 2. 21. ~ 2024. 3. 3.(11일간), 의견 없음.
-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4. 2. 5. ~ 2. 14. (10일간), 의견 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시 주민참여 보장”을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과정에”로 한다.

제5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예산편성관련”을 “지방예산과정관련”으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제4호(중전의 제3호) 및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예산편성”을 각각 “예산과정”으로 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p>
<p>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법령준수의무) ----- ----- <u>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u>에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 ----- -----.</p>
<p>제4조(단체장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단체장의 책무) ----- <u>예산과정에</u> ----- ----- ----- -----.</p>
<p>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제5조(주민의 권리) ----- ----- <u>예산과정</u> ----- -----.</p>
<p>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생략)</p>	<p>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u>예산과정</u> ----- ----- -----. ② (현행과 같음)</p>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2. (생략)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생략)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략)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관련 -----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 예산과정-----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예산과정-----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기능) -----
-----.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2. 예산과정-----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예산과정-----
5. 예산과정-----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김성기 의원
연락처	(033) 330 - 2501